

전주시보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1142호 호외 2023.2.6.(월)

고 시

전주시 고시 제2023-2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

전주시 고시 제2023-27호 전주 도시관리계획(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공 고

전주시 공고 제2023-305호 전주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1-15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 및
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

전주시 공고 제2023-323호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

회 보

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-1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전주 도시관리계획(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전주시 고시 제2018-49(2018.4.30.)호, 전주시 고시 제2019-142(2019.11.8.)호, 전주시 고시 제2021-48(2021. 4. 6.)호, 전주시 고시 제2022-28(2022. 2. 28.)호로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(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와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2월 6일

전 주 시



1. 전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변경 결정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150	역사도심 지구단위계 획구역	완산구 중앙동, 풍남동, 노송동 일원	1,516,323	-	1,516,323	

나. 용도지역·용도지구 결정(변경없음)

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라.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마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결정(변경)

1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(변경)

-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 제7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‘전주시 도시계획조례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와 본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구별로 입지 가능한 용도를 계획함
-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용도지구로 결정되어 있거나, 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’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동시 적용

<기정>

도면 표시	적용지역	건축물 용도		비고 (위치)
용도1 (주거)	영화1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1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1	전층
용도2 (주거)	동문2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1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1	전층
용도3 (주거)	풍남문1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1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			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 주점,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	전층
			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	전층
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 야영장 시설	전층			
용도4 (현세대 문화창출)	영화2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2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5 (전통문화 상업, 역사자원 복원)	감영객사2, 감영객사4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3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6 (전통문화 상업, 역사자원 복원)	전당2, 풍남문2, 풍남문3, 풍남문5, 풍남문7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3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7 (업무)	전당1, 기린로1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4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			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철물, 공구, 창호 및 건설자재 소매점(4751)	1층
			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, 수리점 등 물품 제조·가공·수리 등을 위한 시설(전통 상업 관련시설 제외)	1층

도면 표시	적용지역	건축물 용도		비고 (위치)
용도8 (전통문화)	동문1, 동문7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5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9 (전통문화)	전당3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5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10 (숙박)	동문4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6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2	전층
용도11 (숙박)	풍남문4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7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12 (업무상업)	팔달로4, 충경로4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8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 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철물, 공구, 창호 및 건설자재소매점(4751)	1층
			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, 수리점 등 물품 제조·가공·수리 등을 위한 시설(전통상업 관련시설 제외)	1층
용도13 (업무상업)	팔달로1~팔달로3, 충경로1~충경로3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8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 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철물, 공구, 창호 및 건설자재소매점(4751)	1층
			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, 수리점 등 물품 제조·가공·수리 등을 위한 시설(전통상업 관련시설 제외)	1층
용도14 (공구판매)	대동로1, 대동로3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9	1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1	전층
용도15 (공구판매)	대동로2, 대동로4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9	1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16	동문3	지정	• [별표3. 지정용도]의 지정1	전층
		불허	•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용도17	동문6	지정	• [별표3. 지정용도]의 지정2	전층
		불허	•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
<변경>

도면 표시	적용지역	건축물 용도		비고 (위치)
용도1 (주거)	영화1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1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1	전층
용도2 (주거)	동문2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1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1	전층
용도3 (주거)	풍남문1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1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4 (현세대 문화창출)	영화2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2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5 (전통문화 상업, 역사자원 복원)	감영객사2, 감영객사4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3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6 (전통문화 상업, 역사자원 복원)	전당2, 풍남문2, 풍남문3, 풍남문5, 풍남문7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3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7 (업무)	전당1, 기린로1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4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8 (전통문화)	동문1, 동문7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5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9 (전통문화)	전당3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5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
도면 표시	적용지역	건축물 용도		비고 (위치)
용도10 (숙박)	동문4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6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2	전층
용도11 (숙박)	풍남문4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7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12 (업무상업)	팔달로4, 충경로4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8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13 (업무상업)	팔달로1~팔달로3, 충경로1~충경로3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8	전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14 (공구판매)	대동로1, 대동로3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9	1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1	전층
용도15 (공구판매)	대동로2, 대동로4	허용	•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		권장	• [별표1. 권장용도]의 권장9	1층
		불허	• [별표2. 불허용도]의 불허3	전층
용도16	동문3	지정	• [별표3. 지정용도]의 지정1	전층
		불허	•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용도17	동문6	지정	• [별표3. 지정용도]의 지정2	전층
		불허	•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	전층

■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용도1 ~ 용도17	• 건축물 용도 변경	•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 및 건축물 용도 제한 완화

[별표1. 권장용도] : 변경없음

[별표2. 불허용도] : 변경

-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 제76조,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‘전주시 도시계획조례’ 제27조,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도입 가능한 용도규정에도 불구하고, 불허용도로 제시된 용도의 입지를 불허함

<기정>

구분	적용지역	불허용도	비고
불허1	영화1, 동문2, 대동로1, 대동로3 (제2종 일반주거지역)	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,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불허용도 ②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총 세대수가 4세대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 ③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, 제과점)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일반음식점) 중 「식품위생법」에 의해 허가(신고)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종류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2호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및 제8호 식품접객업(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, 제과점영업)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커피숍, 제과점·제빵점, 패스트푸드점, 꼬치구이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(단, 본사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) 1.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(직영점)의 형태 2. 「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맹사업의 형태 ※ 패스트푸드점이란 햄버거, 도넛, 피자, 샌드위치, 핫도그, 파이, 와플, 케밥, 타코, 부리토, 나초 중 하나 이상의 메뉴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말함. ④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게임관련시설 중 뽑기방 및 이와 유사한 시설 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상점 중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, 일반게임제공업소 중 성인게임장 ⑦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, 요양병원 ⑧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⑩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	

구분	적용지역	불허용도	비고
		<p>⑪나대지 및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게임물 및 놀이형 시설(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또는 유원시설업)</p>	
불허2	동문4 (준주거지역)	<p>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,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불허용도</p> <p>②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, 제과점)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일반음식점) 중 「식품위생법」에 의해 허가(신고)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종류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2호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및 제8호 식품접객업(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, 제과점영업)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커피숍, 제과점·제빵점, 패스트푸드점, 꼬치구이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(단, 본사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(직영점)의 형태 2. 「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맹사업의 형태 <p>※ 패스트푸드점이란 햄버거, 도넛, 피자, 샌드위치, 핫도그, 파이, 와플, 케밥, 타코, 부리토, 나초 중 하나 이상의 메뉴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말함.</p> <p>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게임관련시설 중 뽑기방 및 이와 유사한 시설</p> <p>④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</p> <p>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상점 중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, 일반게임제공업소 중 성인게임장</p> <p>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, 요양병원</p> <p>⑦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</p> <p>⑧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</p> <p>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(바닥면적 150㎡이하 창고 제외)</p> <p>⑩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</p> <p>⑪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</p> <p>⑫나대지 및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게임물 및 놀이형 시설(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또는 유원시설업)</p>	

구분	적용지역	불허용도	비고
불허3	전당1,전당2, 전당3,영화2, 풍남문1,풍남문2, 풍남문3,풍남문4, 풍남문5,풍남문7, 감영객사2, 감영객사4,동문1, 동문7,기린로1, 팔달로1,팔달로2, 팔달로3,팔달로4, 충경로1,충경로2, 충경로3,충경로4, 대동로2,대동로4 (일반상업지역)	<p>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,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불허용도</p> <p>②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, 제과점)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일반음식점) 중 「식품위생법」에 의해 허가(신고)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종류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2호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및 제8호 식품접객업(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, 제과점영업)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커피숍, 제과점·제빵점, 패스트푸드점, 꼬치구이점 및 이와 유사한 시설(단, 본사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(직영점)의 형태 2. 「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맹사업의 형태 <p>※ 패스트푸드점이란 햄버거, 도넛, 피자, 샌드위치, 핫도그, 파이, 와플, 케밥, 타코, 부리토, 나초 중 하나 이상의 메뉴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말함.</p> <p>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게임관련시설 중 뽑기방 및 이와 유사한 시설</p> <p>④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</p> <p>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상점 중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, 일반게임제공업소 중 성인게임장</p> <p>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, 요양병원</p> <p>⑦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</p> <p>⑧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소</p> <p>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</p> <p>⑩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(바닥면적 150㎡이하 창고 제외)</p> <p>⑪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</p> <p>⑫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</p> <p>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시설</p> <p>⑭나대지 및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게임물 및 놀이형 시설(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또는 유원시설업)</p>	영화2지구, 팔달로1지구, 충경로1 지구 내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게임관련시설 중 뽑기방 및 이와 유사한 시설 허용

〈변경〉

구분	적용지역	불허용도	비고
불허1	영화1, 동문2, 대동로1, 대동로3 (제2종일반주거지역)	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,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불허용도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	
불허2	동문4 (준주거지역)	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,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불허용도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	
불허3	전당1,전당2, 전당3,영화2, 풍남문1,풍남문2, 풍남문3,풍남문4, 풍남문5,풍남문7, 감영객사2, 동문1, 동문7,기린로1, 팔달로1,팔달로2, 팔달로3,팔달로4, 충경로1,충경로2, 충경로3,충경로4, 대동로2,대동로4 (일반상업지역)	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,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불허용도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일반게임제공업소 중 성인게임장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시설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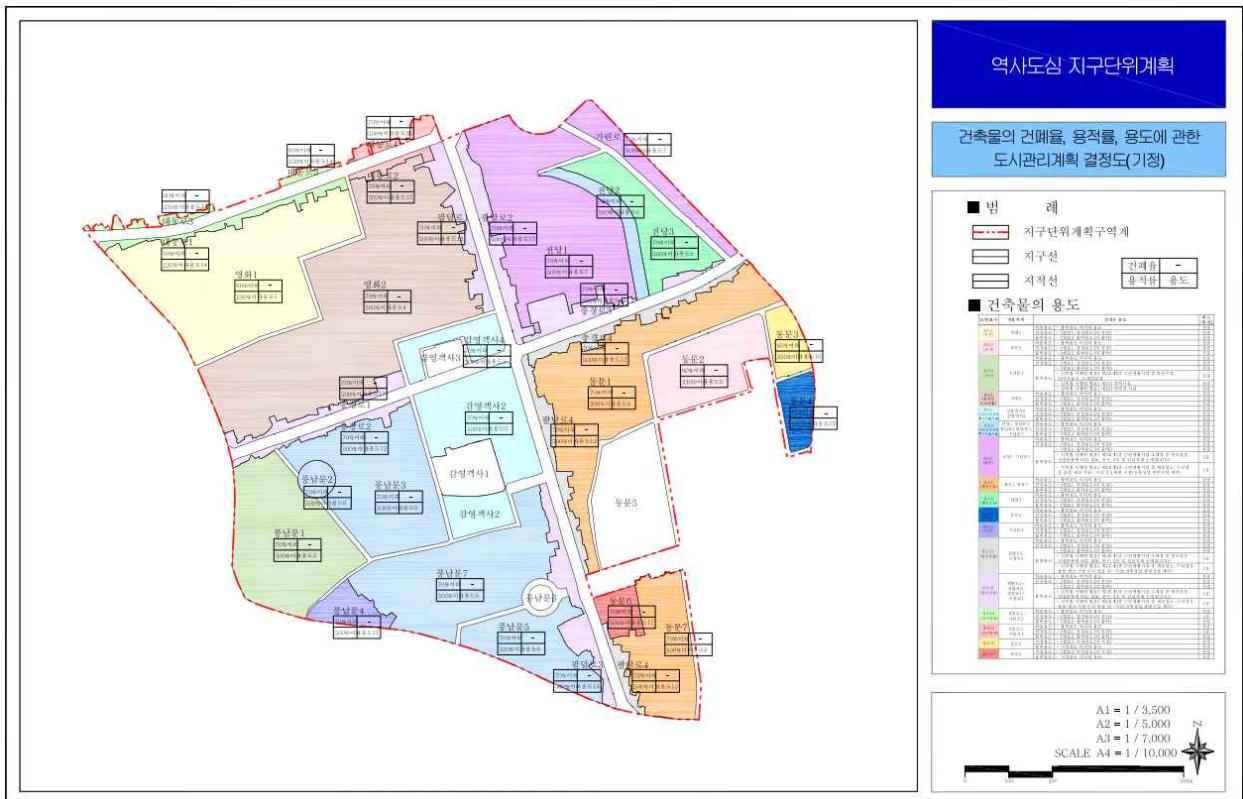
[별표3. 지정용도] : 변경없음

구분	적용지역	지정용도	비고
지정1	동문3	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	한옥마을 공영주차장
		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	
		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	
지정2	동문6	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	전동성당
		•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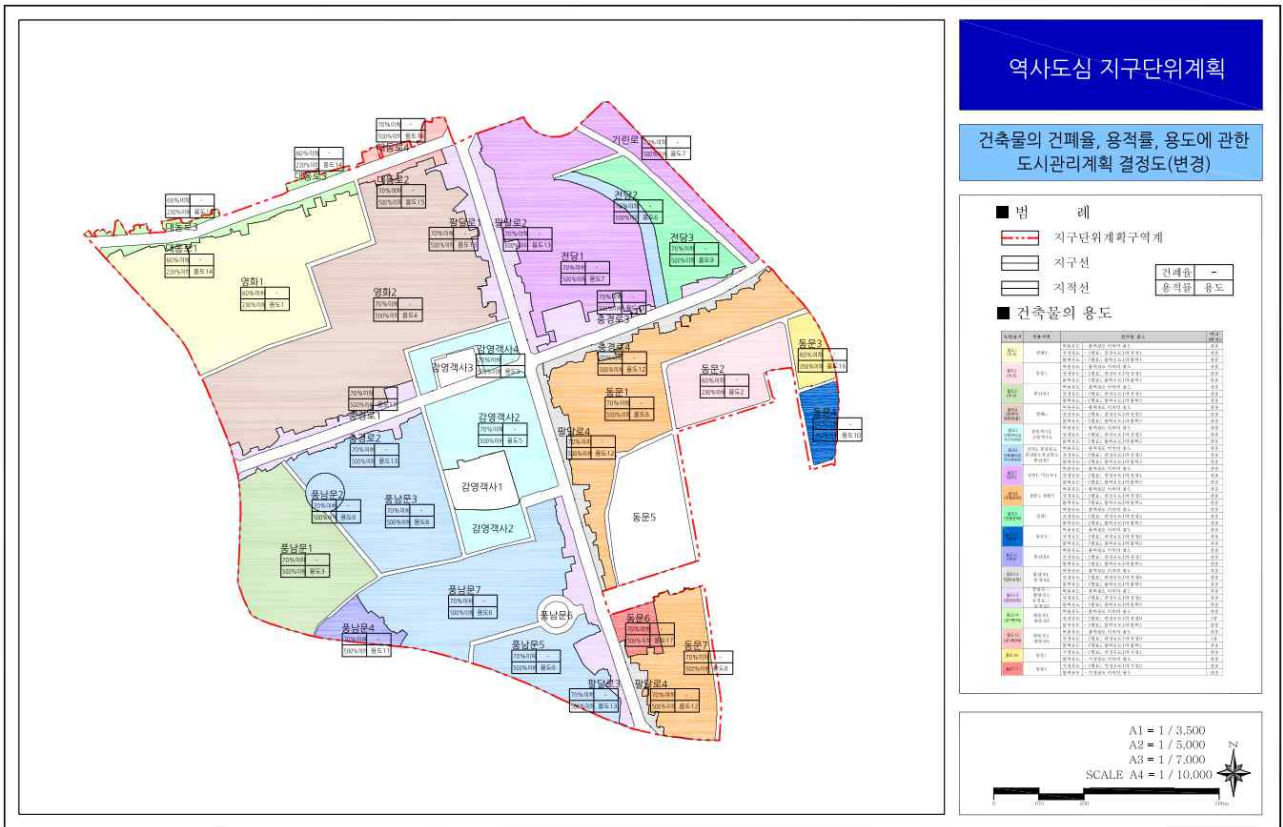
- 2)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3)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4)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5)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6)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7) 건축선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바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2. 관계도면

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
 - 나.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 - 다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 - 라.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 - 마. 획지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 - 바. 건폐율 · 용적률 · 용도에 관한 결정도(변경)
- <기정>



<변경>



사.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
아. 건축선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
자. 특별계획구역 지침도(변경없음)

차.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도(변경없음)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고시 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s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도시계획과(☎063-281-25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